

##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규정

제정 96. 8. 14 규칙 제 866호  
개정 99. 3. 11 규칙 제 993호  
개정 99. 12. 11 규칙 제1033호  
개정 02. 1. 14 규칙 제1127호  
개정 05. 1. 7 규칙 제1285호  
개정 10. 6. 10 규칙 제191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영·경제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와 경영 일반에 대한 연구조사
2. 경영 상담과 교육훈련 사업
3. 경제와 경영 정보서비스 제공
4. 외부기관과 기업체로부터 위탁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및 원가조사, 적산업무
5. 학술강연과 연구발표회 개최
6. 학술논문집 발간과 보급
7. 연구소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련 학과와 공동으로 교과목의 설치
8.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연구소 겸임연구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 연구조정실, 지역경제개발연구센터, 경영컨설팅·교육센터, 원가정보센터, 경제사회-과학기술 융합연구센터 및 부동산경영연구센터를 두고 필요한 연구실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 연구조정실장, 각 연구실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에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연구실의 재정과 운영에 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연구실의 설치와 업무 분장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연구소의 사업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전임연구원, 기금교수, 계약교수, 학술연구 교수, 연수연구원(Post-doc.), 산·학협동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1. 겸임연구원은 상과대학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상과대학 이외의 부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은 소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2. 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교수나 연구소 관련 전문가로서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3.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의 주된 연구활동을 위해 연구사업의 재원으로 소장의 추천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4. 기금교수는 연구소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의 전임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연구소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5. 계약교수, 학술연구교수는 연구소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의 전임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외부지원 재원으로 운영한다.
- ② 전임연구원, 기금교수, 계약교수, 학술연구교수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부산대학교 연구원규정과 부산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에 준한다.
1. 연수연구원(Post-doc.)은 연구소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소에서 연수를 희망하는 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산·학협동연구원은 용역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연구사업에 협조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3. 연구보조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6조 (삭제)

**제7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③ 위원은 연구조정실장과 각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소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개정과 폐지

4. 센터의 설립과 폐지

5. 감사의 선임

6.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소장이나 재적위원 1/4이상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휴직, 정직, 6개월 이상 파견이나 출장 중인 위원은 의사·의결 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⑧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편집위원회)** ① 연구 간행물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기금의 적립과 운용)** ① 연구소 수입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일부를 운영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제12조(예산과 결산)** 연구소의 예산과 결산은 매년 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3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기성회회계 회계연도에 준한다.

## 부 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규정과 부산대학교 지역경제개발연구소규정은 폐지한다.

③ 이 규정 시행 전의 부산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와 부산대학교 지역경제개발연구소의 권리 및 의무는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가 승계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9. 3. 11)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9. 12. 11)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2. 1. 14)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5. 1. 7)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0. 6. 10)

#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윤리 및 운영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운영 및 연구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이 규정은 연구소 구성원 및 투고자들에게 ‘지적소유권’의 가치를 인식시키며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보호하고,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억제하여 학문 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가진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관련 부정행위”는 전체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을 말한다.
2.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수행·심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나.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마.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소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 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사.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 제2장 의무

### 제4조(연구소의 책임과 의무)

1. 연구소는 연구원 및 논문집에 투고하는 투고자에게 본 규정을 주지시키고,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 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본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2. 연구소는 연구원 및 투고자의 저작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수행해야한다.

### 제5조(연구자의 의무)

1. 모든 연구자는 각자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자의 양심과 연구 윤리에 충실하고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학문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연구 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3. 연구 성과물을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본 규정을 주지하여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만을 투고해야 하며, 연구 성과물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 제3장 연구윤리

### 제6조(저자유리)

1. 본 연구소가 발간하는 『경영·경제연구』에 저자로 투고할 경우, 제3조에서 정의한 “연구관련부정행위” 및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연구 지원비를 받은 논문은 지원처의 관리규정을 준수한 논문이어야 투고할 수 있다.
3. 저자는 자신이 공표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책임 및 기여의 정도를 명기하여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진다.

### 제7조(편집위원의 윤리)

1. 편집위원은 편집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논문의 접수, 심사의뢰 및 게재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공유한다.
2. 편집위원은 논문의 저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비밀로 하며, 제출한 연구물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3. 편집위원은 접수 확인과 심사의뢰 및 심사보고서 수합 등의 각 부분에서 이미 제시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투고자나 심사자 그리고 일반 회원들 사이에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부여된 임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연구윤리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제8조(심사위원 윤리)

1. 심사위원은 소정의 심사규정에 따라 투고 논문을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심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학자적인 양심과 학문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자신의 학술적 신념을 위주로 충분한 근거 없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리거나, 논문 전체를 정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저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며, 평가서 작성의 표현에 있어 저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는 단독 비밀심사의 형식을 견지하면서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학술지가 출판되기 이전에는 일체의 사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 제9조(윤리위원회 설치와 구성)

1. 본 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연구 성과물을 투고한 자의 연구관련 및 연구부정행위를 적극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의 조사·처리를 위하여 연구소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내로 하며 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의 회장은 윤리위원들이 선출하고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제10조(제보 및 접수방법)

1.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부정행위에 구체적인 내용 및 증거제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제보자는 사적인 편견이나 예단으로 제보하여 연구소의 분위기를 경직되게 해서는 안되며, 허위로 제보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 등이 투고논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윤리규정 위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보한다.

#### 제11조(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1. 위원회는 본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접수되면 제보사실을 당사자 및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심의·의결한다. 그 의결사항은 연구소장 및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접수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그 비밀을 유지하며 관련자에 대한 신원 정보는 최종 의결 시 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4. 제보에 따른 조사 대상의 투고 논문은 그 사실이 판명될 때까지 일단 게재 유보조치를 내리고, 다음 학술지 발간 이전까지 심의 완료한다.
5. 윤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편집위원은 참석 시 의결권 없음) 그 결과를 즉시 당사자 및 연구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12조(피조사의 권리와 의무)

1.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 소명의 방식에는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공개적인 논의도 가능하다.
2.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연구소장은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4. 본 연구소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자는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만일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 또한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제13조(검증의 책임)**

1. 연구부정행위가 보고된 경우 이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기관에 있다.
2.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제14조(징계의 유형)** 윤리위원회의 징계 유형에는, 경고, 투고제한, 임원 해촉, 회원자격 정지박탈 등이 있으며, 투고(계재)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요구, 게재유보 및 게재 취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비 수혜의 경우 부당 집행으로 그 지원기관으로부터 심각한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된다.

**제15조(이의 신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판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1.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중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7조(윤리규정 준수)** 이 규정은 본 연구소 규정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되고, 발효와 동시에 시행된다. 단, 이미 필요한 시행세칙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연구소의 규정 개정원칙에 따른다.

**제19조(기타)** 이상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본 연구소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연구윤리규정 서약서 및 저작권 위임 동의서

\* 논문명: \_\_\_\_\_

상기 논문을 경영·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경영·경제연구』에 게재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모든 저자가 서명으로서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1. 본 논문은 창의적이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지적인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 등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4.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저자(들)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5. 본 논문이 『경영·경제연구』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복사·저작권 포함)를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에 위임합니다.
6. 저자(들)는 상기 내용 외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윤리 및 운영 규정』 전문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제1저자 : (인)

제2저자 : (인)

제3저자 : (인)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귀중

## 『경영경제연구』 편집 규정

2006年 6月 改正

2008年 12月 改正

2010年 3月 改正

### 제1조(목적)

『경영경제연구』는 한국 경영학, 경제학 분야의 학술적 지식의 축적에 기여하고자 경영경제학 전 분야에 걸친 이론적, 실증적 연구논문을 게재하고 경영, 경제 분야에 관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학문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며 연구 및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학술자료를 제공하려는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의 학술지이다.

본 규정은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의 학술논문집 『경영경제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편집위원회)

#### 1. 편집위원회 구성

- (1) 편집위원회는 연구실적과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경영경제 각 연구분야의 최고의 학문적 권위자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의 정원은 1인의 편집위원장 등 2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3) 부위원장은 필요시 둘 수 있고 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구소 소장이 임명한다.

#### 2. 편집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1) 학회지의 내용 구성, 투고논문 심사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심사자와 투고자간 의견교환 및 중재,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서 결정, 게재논문의 교정,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원고료지급 등의 결정권한을 갖는다.
- (2) 투고자의 학회지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 준수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 (3) 투고논문 심사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논문의 내용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원만한 논문심사와 심사자와 투고자간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5) 편집위원회는 그 권한과 의무에 관해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 (6) 편집위원은 투고논문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의 개인적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심사 완료 후에도 심사자에 대한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된다.

3. 편집위원장

- (1) 편집위원장은 경영경제연구소의 소장이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관한다.
-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

- (1) 편집위원은 학덕과 양식을 겸비한 대학과 관련연구기관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교체되는 편집위원 수는 전체 편집위원 수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

5. 편집위원회 회의

-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소집하며 매년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
- (2) 편집위원회 회의의 의사결정은 전체 편집위원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3조(학술지 발간)**

학술지는 연 2회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특별호를 발간 할 수 있다.

**제4조(학술지 편집방침)**

1. 논문의 투고

- (1) 경영경제 학문분야의 연구자는 누구나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다. 투고형태는 아래한글로 작성한 문서를 원칙으로 한다.
- (2)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예외로 한다.
- (3)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 (4) 논문의 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경영경제연구소가 갖는다.

(5)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 2. 논문의 저자

(1) 저자는 단독저자,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구분한다.

(2) 단독저자의 경우, 투고자가 1인으로서 주저자이면서 동시에 교신저자가 된다.

투고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주저자, 교신저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3) 주저자는 공동저자 중 논문작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자로서 1인에 한한다.

(4) 교신저자는 공동저자 중 논문내용에 대한 답변의 의무를 갖는 자로서 1인에 한한다.

교신저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본다.

## 3. 논문의 표절 방지

(1)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학문적인 독창성을 가지고 연구가 가지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다른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인용함에 있어서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들은 학술윤리를 고양하고 표절방지를 위해 논문 심사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 (논문 심사)

### 1. 논문의 심사과정

(1)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투고자는 투고신청서와 투고논문 1부를 전자우편(e-mail)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학회지 원고제출 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3)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에 의하여 선임된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익명심사(blind review)가 이루어진다.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한다.

(4)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양식에 따라서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사자가 의뢰 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은 투고자는 수정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투고한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7) 논문집필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당초 심사자가 다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8)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기고 논문 등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게재할 수 있다.
- (9) 편집위원장이 본 학술지에 자신의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 중의 한 사람이 편집위원장을 대신하여 그 논문에 대한 심사를 수행한다.

## 2. 논문심사 기준과 심사 결과

### (1) 논문 심사 기준

- ① 연구목적과 주제의 적합성
- ② 기존 연구의 검토과정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③ 논문전개의 논리성
- ④ 논문분량의 적절성
- ⑤ 표·그림·지도 형식의 적절성
- ⑥ 학문적 기여도

### (2) 심사결과 처리

- ①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에 대해 그 내용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3명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가부를 결정한다.
- ② 심사자는 논문심사기준을 기준으로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 ③ 심사자는 수정후게재 또는 수정후재심 판정시 수정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게재불가 판정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3명의 심사자에 의한 개별 심사결과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종합하여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여부를 판정한다.
- ⑤ 종합 판정결과가 현상태게재 또는 수정후게재인 경우에는 논문게재가 확정된다.
- ⑥ 종합 판정결과가 수정후재심인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논문 투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수정논문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편집위원회가 그 사유의 합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추후 수정

논문의 제출이 허용가능하다.

- ⑦ 심사자는 6항의 수정논문을 평가하여 당초 지적한 사항에 대한 수정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게재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 ⑧ 심사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심사결과조합	심사결과
AAA	현상태게재
AAB	수정후게재
AAC	수정후게재
AAD	수정후재심
ABB	수정후게재
ABC	수정후재심
ABD	수정후재심
ACC	수정후재심
ACD	수정후재심
ADD	게재불가
BBB	수정후게재
BBC	수정후재심
BBD	수정후재심
BCC	수정후재심
BCD	수정후재심
BDD	게재불가
CCC	수정후재심
CCD	게재불가
CDD	게재불가
DDD	게재불가

A: 현상태게재, B: 수정후게재, C: 수정후재심, D: 게재불가

### (3)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논문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이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기존의 심사위원을 제외한 새로운 심사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 3. 원고료지급

- (1) 논문 투고와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치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 (2) 별쇄본은 20부를 원칙으로 한다. 추가 인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투고자가 인쇄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

- (1) 논문의 게재순서는 가급적 게재확정 순서에 따르도록 하지만 편집위원장이 학술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2)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게재확정 된 후에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이 발행한다.
- (3)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경영경제연구』 투고규정

### 1. 투고시기 및 게재순서

- (1) 투고논문은 연중 편집위원회가 접수하고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 (2)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확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게재확정순서에 따라 게재된다.
- (3) 투고논문의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 2. 논문의 투고

논문의 투고는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홈페이지(<http://ime.pnu.edu>)에 있는 “논문투고”의 안내에 따르거나 이메일([imepnu@pusan.ac.kr](mailto:imepnu@pusan.ac.kr))로 제출한다.

### 3. 논문투고자의 의무

- (1)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2) 투고논문을 다른 간행물에 중복하여 심사를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 (3) 논문투고자는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윤리 및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사용언어 및 원고작성방법

- (1) 투고논문은 국문, 국한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 (2) 투고논문은 한글97 이상, 마이크로소프트 워드2000 이상의 워드프로세스로 작성되어야 한다.
- (3) 투고논문의 분량은 A4 용지로 20면 내외로 한다.
- (4) 원고는 다음의 편집양식(한글 97 경우)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글97 이외의 다른 워드프로세스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편집 양식을 따른다.  
용지여백은 위/아래30, 왼쪽/오른쪽 30, 머리말/꼬리말 20, 본문글자크기 10, 큰제목크기 18, 문단모양은 여백 0, 줄 간격 170, 들여쓰기 2자, 글자체 신명조, 정렬 양쪽혼합
- (5) 모든 페이지에는 페이지 번호가 연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 (6) 익명으로 논문이 심사될 수 있도록 투고논문의 표지를 제외하고는 저자가 누군지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 5. 논문의 구성

논문은 표지,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Abstract)의 순서로 구성한다.

- (1) 논문의 표지에는 해당 전문분야, 제목(영문 제목 포함), 저자의 이름(영문 성명 포함), 소속(한글, 영문 포함),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명시하고, 논문작성에 도움을 준 사람 등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acknowledgement)은 하단에 표시한다. 그리고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주저자)의 이름을 먼저 적고 공동저자의 이름은 논문완성에 기여한 공헌도의 순서대로 적는다.
- (2) 논문의 개요(ABSTRACT)는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의 공헌 및 연구방향 등에 관하여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적절한 용어를 선택한다. 영어논문의 경우 영문으로 150자 내외로 작성하고, 국문초록을 마지막 장에 작성한다. 한글논문의 경우 국문(600자 이내) 및 영문(150자 내외)을 각각 작성한다.
- (3) 주제어(Keyword)는 5개 이내로 선택하여 반드시 명시(국문, 영문 모두) 하도록 한다.
- (4) 영문은 제목, 저자명, 요약내용, 영문색인어, 영문소속 순으로 작성한다.

## 6. 본문의 작성

논문은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제목과 부제는 간결해야 한다. 참고문헌, 표, 그림은 본문 뒤에 별도의 페이지로 구성되어야 한다.

## 7. 한글요약

논문의 처음 1페이지에 논문제목, 저자 성명 및 소속, 요약을 포함하여 한글로 작성한다. 같은 페이지의 주석에 연락담당 저자(주저자)의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주소 등의 연락처를 표기한다. 국문요약은 500자 내외가 되어야 한다. 논문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단어 5개를 요약 다음에 제시한다.

## 8. 영문요약

논문의 마지막 1페이지는 논문제목, 저자 성명 및 소속, 요약(abstract)을 포함하여 영문으로 작성한다. 같은 페이지의 주석에 연락담당 저자(주저자)를 표시하고 연락담당 저자의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주소 등의 연락처를 표기한다. 영문요약은 200 단어 내외가 되어야 하며, 논문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단어(key words) 5개를 요약 다음에 제시한다.

## 9. 연구비 수혜 등의 공지

연구비 수혜 등의 공지는 영문요약과 국문요약의 첫 페이지에 각주로 기재하며, 각주 번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10. 제목의 처리

장제목 및 절제목은 굵은 글씨로 아라비아 숫자 일련번호와 함께 다음 예와 같이 작성되어야 한다.

작성예: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문헌의 연구

### II. 연구모형

1. 연구방법론
  - 1.1 연구방법론 1
  - 1.2 연구방법론 2
2. 연구모형 (가설)
  - 2.1 연구모형 1
  - 2.2 연구모형 2
    - 2.2.1 연구가설 1
    - 2.2.1 연구가설 2

### III. 조사 및 자료

### IV. 실증분석

1. 실증분석 1
2. 실증분석 2
  - 2.1 실증결과 1
    - 2.1.1 세부 실증결과

### V. 결론

참고문헌

부록

### 11. 각주의 처리

각주는 최소한도로 작성되어야 한다. 본문 내에서는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가 상첨자로 처리되어야 한다. 각주 내용은 줄간격 130%로 작성되어야 하며, 표, 그림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 12. 표의 작성

본문에는 표의 위치를 지정해야 한다. 제목은 아라비아 숫자 일련번호와 함께 표의 내용을 잘 대표하는 단어로 구성되어야 한다. 표 설명은 표 제목 하단에 위치하며, 표는 표 설명 하단에 위치한다. 표 각주는 표의 하단에 위치하며, 표의 본문에 상첨자로 각주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 13. 그림의 작성

본문에서는 그림의 위치를 지정해야 한다. 그림 제목은 아라비아 숫자 일련번호와 함께 그림의 내용을 잘 대표하는 단어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림 설명은 그림 제목 하단에 위치하며, 그림은 그림 설명 하단에 위치한다.

### 14. 수식의 작성

매우 짧은 수식을 제외한 모든 수식은 별도의 줄로 가운데 정렬로 작성되어야 하며, 오른쪽 끝에 일련번호를 (1), (2) 등과 같이 붙인다.

### 15. 참고문헌의 작성

참고문헌은 본문 뒤에 별도의 페이지로 구성되어야 한다.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한국어문헌, 영어문헌, 그 외의 언어로 된 문헌 순으로 열거한다.

#### (1) 정기간행물의 경우

저자명, 출판년도, 논문제목, 간행물명(이탤릭체), 권(Vol.), 호(No.), 면(page) 순으로 기재한다. 단, 영어논문의 경우 각 호(No.)의 면(page)이 전 호의 면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호를 생략할 수 있다.

예:

한국어논문

김갑식·김을식·김병식, 1980, “한국 증권시장의 미시구조 연구,” 증권학회지 10(2), 1-28.

예:

영어논문

Jensen, M. C. and W. H. Meckling, 1976,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1), 305-360.

Venkatesh, V., M. G. Morris, G. B. Davis, and F. D. Davis, 2003,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Toward a Unified View,” *MIS Quarterly* 27(3), 425-478.

(2) 정기간행물이 아닌 경우

〈단행본〉

저자명, 출판년도, 도서명(이탈릭체), 출판회수(2판 이상인 경우), 권(2권 이상인 경우), 출판사명, 출판지 순으로 기재한다.

예:

홍길동, 1998, 증권시장의 구조, 한국출판사, 서울.

Airasian, P. W., 1991, *Classroom Assessment*(2nd ed.), New York: McGraw-Hill.

〈학위논문〉

홍길동, 2000, “중국 경제성장의 요인분석,” 한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신문〉

매일경제신문, 2007. 7. 1, “금융회사 감시·감독 독립성 보장해야”.

〈웹사이트〉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http://ime.pnu.edu>.

## 16. 본문 내의 인용

- (1)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 또는 발행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

논문의 경우: “이 문제에 관하여 홍길동(1993)은 ...”

단행본의 경우: “홍길동(1993: 25)은 ...”(1993년도 문헌의 페이지 25의 경우)

신문의 경우: “매일경제신문(2007. 7. 1)에 따르면 ...”

웹사이트의 경우: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홈페이지(통계자료실)에서 제공하는 ...”

- (2) 인용하는 논문이나 저서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연도를 표시한다. 하나의 사항에 여러 문헌을 함께 인용하는 경우 문헌들 사이를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예:

“한 연구(홍길동, 1992: 25)에 의하면...”, “최근의 연구들(Taylor, 1992; Anderson, 1990: 25)에 의하면 ...”

- (3) 저자가 다수일 경우 2인까지는 모두 표시한다. 3인 이상의 경우는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국문의 경우 ‘외’, 영문의 경우는 ‘*et al.*’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 외(1992), Wittrock *et al.*(1986: 25)

## ■ 원고 보내실 곳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부산대학교 공동연구소동 813호 경영·경제연구소  
TEL. 051)510-1888  
E-mail : imepnu@pusan.ac.kr  
Home Page : <http://ime.pnu.edu>

경영경제연구

(ISSN :1229-2346)  
제 29권 제 2호 (통권 34권)

---

2010년 12월 25일 인쇄

2010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처 :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Tel. 051)510-1888, Fax. 051)581-2477

발행인 : 강상목

인쇄처 : 다인커뮤니케이션즈

Tel. 051)242-4837, Fax. 051)242-4840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